

고성군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96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16.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3. 17.
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6. 3. 28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이유

「공무원여비규정」(대통령령 제19270호)의 국내출장여비 지급단가 조정에 따른 고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고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의2 본문 중 근무지내 출장 시 여비 지급 단가 상향 조정(안 제2조의2)
 - 근무지 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 : “1만원”을 “2만원”으로
 - 근무지 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 : “5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개정함
 - 관용차량 이용하는 자 : “5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개정함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6-88호(2006. 2. 7. ~ 2006. 2. 27.)
- 의견 제출사항 없음.

나. 관계법령 및 근거

-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중 국내출장여비 지급단가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 등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고성군공무원 여비조례중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의 단가와 같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6. 3.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